

1

과제신청 기본사항 관련

Q1-1. 통합공고 상 다수의 RFP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 지원하시려는 과제의 연구 목표, 연구 내용 등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 RFP별 지원분야 및 지원과제 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원하고자 하는 RFP 필수 확인

Q1-2. 과제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구성 요건은 공고안내서의 RFP별 과제구성 요건 및 각 사업별 RFP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RFP별 지원대상 및 특기사항의 필수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사전검토 탈락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필수 확인 후 신청

※ 과제 구성 요건은 해당 사업의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

②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과제 구성 요건 (예시)	① 주관	② 주관+공동
	주관 OO기업 / A박사	주관 OO기업 / A박사 공동1 △△대학 / B교수 공동N □□대학 / C교수
* ①,②의 경우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Q1-3. 동일 연구개발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연구개발기관은 법인번호 기준으로 구분하며,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일 법인번호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 사전검토 탈락 대상이 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2장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61페이지) 참고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의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Q1-4.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필수인가요?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한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Q1-5. 기업 참여 시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제약조건이 있나요?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과제신청 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첨부2) 검토 항목에서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첨부서류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고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 이 외에 범부처 국가 R&D 참여제한 예외기준(안)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에서 제외

< 범부처 국가 R&D 참여제한 예외기준(안)>

신청자격 제한	예외기준(안)	추가 증빙서류
세금채납 / 채무 불이행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재기지원보증 대상기관 확인 서류(지원대상/보증 대상 통보공문, 협약서 등)
회생·파산	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 최근 변제금 납부 확인 내역(은행 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등)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등
부채비율 / 자본잠식	①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③ 선정평가 전(3 영업일 전까지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계약서(약정서) · 해당 차입금 및 상환우선주에 대한 결산 명세서 · 투자 금액에 대한 계약서(약정서) 또는 결산 명세서 · 외부회계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 ·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수정 재무제표 등

Q1-6. 가감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감점 항목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의 선정평가 중 ‘연구개발과제의 가감점 기준·방법’에 따라 적용되며, 가점 항목은 각 RFP에 제시된 항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 가감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적용(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적용되지 않음)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 자료실 → 법규/서식 → 관련법규 → 가이드라인 참고

Q1-7.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고문의 첨부서류 중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RFP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항 등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확인 필요

Q1-8. 과제신청 마감 이후 신청 완료된 과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과제신청 취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1-9.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이 되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1-10. 과제구성요건 중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이 필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제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전산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www.iris.go.kr) 추가 설정해야 하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비 등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전산 미설정 시 사전검토 탈락

Q1-11. 첨부서류 중 '첨부5)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는 어떤 연구에 대해 작성하나요?

- 비임상/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과제는 필수 작성해야 합니다.

Q1-12. 사전검토 주요 탈락 사례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 하나의 과제에 동일 연구개발기관 중복구성(동일 법인번호)인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법인번호가 중복되면 사전검토 탈락

- 과제제안요구서(RFP)별 지원대상 미충족(공동연구개발기관 미구성, 기업·병원·임상의학자 미참여 등)인 경우

※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이 필수인 경우 전산 상 구성(추가)하지 않으면 사전검토 탈락(계획서 명시,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등록 등 사유 불인정)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부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간 만료 등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그 외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미충족하는 경우

※ 과제신청 전 반드시 RFP별 지원대상·필수요구 사항 등 확인 후 작성 및 제출

Q1-13. 과제 신청 완료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전산입력)이 가능한가요?

- 과제 신청 마감일(해당 공고 마감시간 기준) 전까지는 수정(연구개발계획서·전산입력)이 가능하나, 과제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마감일 전에 신청완료된 과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IRIS상 주관연구기관에서 반려 버튼을 클릭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IRIS상에서 과제신청이 최종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해당과제에 대한 기관담당자가 승인까지 완료해야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Q1-14. 연구개발계획서(PART2), 기타 서식 등 파일 업로드 후 PDF 변환 시 오류(글씨체 변경, 문서 깨짐 등)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PDF 변환 오류는 ① 첨부하는 문서가 ‘보안문서’ 일 경우, ② ‘숨은 설명’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문서 내 ‘유료 및 번들폰트’ 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7. [참고] IRIS 관련 매뉴얼 내 「PDF 변환 오류 사례」에 문제사례별 해결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15. 제출완료된 과제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어 제출회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출완료된 과제에 대해 전문기관 반려처리 없이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는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제출회수’ 버튼을 통해 가능하며, 현재 과제 상태가 ‘제출완료’ 또는 ‘기관담당자 승인’ 상태일 때만 제출회수가 가능합니다. (기관담당자 승인 대상 과제의 경우 책임자 접수 종료일 전에만 회수 가능. 접수기간 중이더라도 과제 상태가 ‘접수마감’ 이면 제출회수 불가)

※ 경로: R&D업무포털>과제접수>(신청용)연구개발계획서 우측 상단 ‘제출회수’버튼 클릭 후 사유 입력

Q1-16.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DMP) 작성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제안요구서(RFP) 상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DMP) 제출이 명시된 과제가 대상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별로 필수 작성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과제 제외)

* 과제제안요구서(RFP)별 첨부서류 확인요망

Q1. RFP 사업유형에 표시된 '혁신도전형 R&D'는 무엇인가요?

- '혁신도전형(APRO*) R&D'는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고자 범부처 R&D 사업 중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지정 및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APRO(앞으로, 이태리어로 문을 열다는 뜻,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유형,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first mover 가 되는 전환 의미, Aim high, Problem-solving, Revolutionary, Over & over)

※ (참고) 정부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24.3.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지원 중임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은 '24년 제2차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내 혁신임무형(파괴적 혁신기술형)에 지정됨('24.6.5, 혁신도전특위)

Q2. '혁신도전형(APRO) R&D'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혁신도전형 R&D'는 연구의 도전성 및 혁신성 등 혁신도전 R&D 평가 지표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선정평가 발표를 권장합니다.

※ (참고) 선정평가 항목 중 '연구의 도전성 및 혁신성(30)' 및 '혁신도전형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10)'에 해당

- 또한, 도전적 목표 수립의 촉진을 위해 단계·최종 평가 시 평가등급(우수/보통/미흡)을 폐지하고 과정중심의 심층 정성평가를 도입합니다.

Q3. "단일 화합물 개발 과제만 지원 가능(혼합물, 추출물 제외)" 이라는 요건에서 단일 화합물이란 small molecule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 '단일 화합물'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조성이 명확히 규정된 하나의 활성 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을 의미하며, 저분자 화합물 (Small molecule)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과제는 혼합물이나 추출물 형태가 아닌, 단일 성분으로 규격화된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화학적 합성 기반의 단일 저분자 화합물, 펩타이드, 올리고머 등 단일 구조를 갖는 물질이 이에 포함됩니다.
- 다만, 바이러스 생활사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면역조절 약물(항염증 치료제, 면역 치료제, 면역억제제 등) 개발 과제와 항체/혈장 치료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FAQ 내용은 필요 시 추가·보완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